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02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임미애 · 손 술 · 송옥주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이수진 · 이연희 · 임호선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 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현행법은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은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불진화자원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산불영향구역이 100ha 미만인 중·소형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시·도지사, 1,000ha 이상인 산불·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산불·재난성이 우려되는 대형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림청장의 선제적 지휘가 불가능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 중·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4항).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할 지역”을 “관할 지역(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한다)”으로, “중소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은 제1항의”로, “대형”을 “중·대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를 “경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동시다발 산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지정하여 통합지휘를 명할 수 있다.
- ⑤ 통합지휘의 지정,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산림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  
-----  
중·대형 -----  
-----

-. <단서 삭제>

<삭 제>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③ -----  
-----  
-----  
-- 경우-----  
- 제1항 및 제2항-----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동시다발 산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지정하여 통합지휘를 명할 수 있다.

⑤ 통합지휘의 지정,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